

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제13/2565호
포괄적인 사업 이전 촉진 방안

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/2565호의 내용과 관련하여, 투자위원회는 제조설비,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촉진법 제16조, 18조 및 31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.

1. 신규 투자로 투자촉진을 신청하는 제조업 프로젝트

조건

- (1) 투자촉진 신청서는 2023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
- (2) 제조업에 대한 투자촉진 신청서와 국제 비즈니스 센터(International Business Center: IBC)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만 함께 제출해야 한다. 단, 투자청에서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한 활동은 예외로 한다.
- (3) 국제 비즈니스 센터(IBC)는 투자촉진증(Investment Promotion Certification)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첫번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. 만약, 신청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, 3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는 취소된다.
- (4) 지원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지역 본부 및/또는 연구개발(R&D)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.

혜택

- (1) 국제 비즈니스 센터(IBC)와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3년 간 받을 수 있다.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,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(2) 국제 비즈니스 센터 및 R&D 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 촉진을 신청하는 제조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추가로 5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.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, 총 면제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(3) 비조세 혜택

2. A 그룹에 속한 업종으로 기존에 투자 촉진을 받고 있는 제조 프로젝트

조건

- (1) 이 방안에 따른 투자촉진 신청서는 2023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
- (2) 신청자는 기존의 제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

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투자 축진을 신청해야 한다. 추가 혜택 신청일 당시,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과 면제 금액 한도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한다.

- (3) 국제 비즈니스 센터(IBC)는 사업 수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첫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, 기본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만약, 프로젝트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,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은 3년 간 취소된다.
- (4)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지역본부 및/또는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.

혜택

- (1) 국제 비즈니스 센터(IBC)와 함께 투자축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,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.
- (2) 국제 비즈니스 센터(IBC)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축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,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.
- (3) 비조세 혜택

본 고시문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고시일 2022년 12월 8일

쁘라윛 찐오차 장군(General Prayut Chan-o-cha)

(Prayut Chan-o-cha)

총리

투자위원회 의장